



경찰청

▋생명보험협회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8.13.(화) 조간	배포	2024.8.12.(월)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	책임자 담당자	실 장 정제용 (02-3145-8730) 팀 장 현은하 (02-3145-8888)
	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 담당자	총 경 강태영 (02-3150-2168) 경 정 김현수 (02-3150-2037)
	국민건강보험공단	책임자 담당자	실 장 이윤학 (033-736-4400) 부 장 이중근 (033-736-4405)
	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	책임자 담당자	상 무 최종윤 (02-2262-6614) 부 장 김희경 (02-2262-6658)
	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	책임자 담당자	상 무 신종혁 (02-3702-8580) 부 장 박승호 (02-3702-8584)

금융감독원-경찰청-건보공단-생·손보협회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주요내용 집중 홍보기간 운영

- '24.8.14.부터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됩니다. -

〈 주요 내용 〉

- ★ 금융감독원, 경찰청, 건강보험공단, 생·손보협회는 '24.8.14.부터 시행되는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
 - 그간 **금융감독원**과 **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**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**시스템을 구축**하고, **실무기준을** 마련하는 등 **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**하였고,
 -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**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**으로 홍보하기 위해 **5개 기관 공동**으로 **홍보계획을 마련**하여 **체계적**으로 **추진**하기로 하였음
- - **집중 홍보기간** : '24.8.14.(수) ~ 9.30.(월) (일부 하반기 지속)
 - 주요 홍보내용
 - 보험사기 **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·블로그 홈 화면 공지**, **주요 포털 배너광고**,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
 - **온라인** 상 **보험사기**로 의심되는 **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** 진행 (8.14.~9.30. 기간 동안 신고한 분에게는 **커피쿠폰**을 **증정**)

Ⅰ. 추진 배경

□ '24.8.14.부터 보험사기 알선·광고행위를 처벌하고,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이 시행

[법개정 주요내용]

- ① 보험사기의 알선·유인·광고 등 행위 금지·처벌
- ② 보험사기의 알선·유인·광고 등 심의·시정요구 요청권
- ③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
- ④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
- ⑤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
- 그간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,
 실무기준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*
 - * '24.7.4. 「보험조사협의회」를 통해 13개 관계기관과 준비상황 등 합동점검
- 이에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
 위해 5개 기관 공동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집중 홍보를 추진

Ⅱ. 주요 홍보계획

◇ 다양한 온·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 권유·광고행위 처벌 등 법개정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

① 카페·블로그 등 유의사항 공지

○ 네이버·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·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

[네이버 카페 홈 공지내용(안)]

■ '24.8.14.부터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에 따라 <u>보험사기의 알선·유인·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</u>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<u>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</u>에 처해질 수 있으니 <u>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·게시·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</u>를 부탁드립니다.

② 네이버·카카오·유튜브 등 모바일·온라인 광고 실시

- 네이버·카카오·유튜브 등에서 **법개정 주요내용**이 노출될 수 있도록 **모바일·온라인 광고*** 등 실시
 - * 광고 노출 클릭시 금융감독원 법개정 안내사항 홈페이지로 이동







③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

○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

④ 보험사기 광고 신고 이벤트

○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 실시

[이벤트 개요]

- (기간) '24.8.14.(수) ~ '24.9.30.(월)
- (방법) 보험사기 의심 광고 화면을 캡처하고 URL을 복사하여 신고
- (경품) 선착순 500명에게 커피쿠폰 (5천원 상당) 제공



보험사기 광고 신고하기 바로가기



5 주요 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

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,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,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

⑥ 신규 포스터 제작·배포

○ 보험사기 유인·알선·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하여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·GA 대리점 등에 배포하여 게시

Ⅲ.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

- □ 금융감독원·경찰청·건보공단 및 생·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
 -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
 -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*
 - * '24.8.27. 보험회사 SIU 임원·부서장 대상 간담회 개최(약 100명 참석)
- □ 한편, 보험사기 **알선·유인** 등은 **브로커**를 통해 **은밀하게 진행** 되므로 이들을 **적발·처벌**하기 위해서는 **내부자 제보**가 **중요**함
 - **브로커**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·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

[보험사기(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행위 포함) 신고방법]

- ▶ **(유선 상담·신고) ☎**1332 **4**번(금융범죄) **4**번(보험사기)
- ▶ (인터넷 접수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상단 『민원·신고』→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- ▶ (우편 접수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- 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 (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)
- ※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공식 홍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개정내용 홍보 사이트 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528

개정법 주요내용 바로가기



